

4. 순천 소작운동의 역사적 의의

순천 소작인조합운동의 지도자였던 이영민은 조선의 소작문제는 소작료 확정과 소작기간 연장문제에 불과하므로 실로 단순한 문제이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농민생활이 안정되며, 업무에 면려(勉勵)하여 비로소 농사개량에 착수할 수 있어 조선농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며, 따라서 지주·소작인 간의 공존공영의 문로(門路)를 개척함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조선의 소작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쟁의는 쉴 날이 없을 것이며 따라서 농사개량도 되지 못하고 조선농촌은 불안한 상태를 계속하여 이 영향이 장래 어느 지경에 이를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소작료를 전 수확의 4할로 표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영민은 그 근거로서 5할의 소작료를 내고 나면 1년간 지출한 비용도 제대로 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¹⁾ 이는 앞서 언급한 남선농민회연맹회의 농가경제조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대목이었다.

한편, 지가가 폭등하여 소작료를 낮추면 이익이 없다거나 땅값과 소작료를 비교하면 은행이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영민은 “대지주는 이미 20~30년 전에 저렴한 토지를 사들여 그 동안 충분한 소작료를 받아왔으며, 20~30년 전의 지가를 소작인에 대한 대부금으로 친다면 소작인은 이미 그 빛의 원리금마저도 다 갚은 셈”이라는 논리를 들어 반대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농사개량과 소작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농사개량을 하려면 반드시 소작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지주와 소작인이 합심하여 농사개량에 힘쓰면 쌍방의 이익은 4~5할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같은 이영민의 소작문제 인식은 상사면농민대회 회장(운곡리 지주)인 최익연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익연은, “소작료가 4할로 철저히 실행만 되면 소작문제가 완화됨에 따라 농민이 안업(安業)하여 농사개량에 노력하니 4~5년 안에 지주의 이익이 금일보다 4~5할 이상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소작인들의 요구를 지지하였다. 1923년경까지 순천 지역의 소작인조합운동이 상당히 개량적이었던 사실은, 순천면농민대회(2. 3.)와 송광면농민대회(2. 12.)가 “종자 채택과 비료·농구 등의 개량에 주의하여 농업을 발전할 일”, “소비절약의 목적으로 금연단주를 실행하며 사치품을 금지할 일”, 또는 “농사개량 발달에 적의(適宜)한 시설을 할 일”, “토산장려를 철저히 할 일” 등을 결의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

일제 강점기 순천 소작운동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지방정치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유지포섭정책), 그리고 문화정치 공간에서 형성된 혁신청년집단의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었다. 일제는 소작인들의 조직적 저항을 부추겨 지주들을 총독정치의 민간조력자로 포섭한 뒤 이들을 매개로 농업 개발, 농민 수탈, 농촌 통제를 이루고자 하였다. 조선인 지주들은 이 같은 지방정치구조 재편정책에 편승하여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1920년대 초반기 이른바 ‘유지청년’들이 소작인조합운동에 상당히 협조적이었던 까닭은 이를 통해 당국의 신용과 더불어 사회의 인망을 얻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더하여 3·1운동의 실패 이후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혁신청년들 사이에 보편화하기 시작하면서 소작인조합운동은 더욱 활기를

1) 『동아일보』 1923. 11. 13.

2) 『조선일보』 1923. 2. 9· 『동아일보』 1923. 3. 7.

떨 수밖에 없었다.

사실 순천지역 소작쟁의의 역사적 의미를, “일제시대 소작쟁의는 일제와 일본인 대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이었으므로 당연히 항일민족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한다면 당연히 항일민족운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순천지역의 소작쟁의는 순천군청과 경찰, 그리고 일부의 ‘양심적 지주’들의 ‘지지’와 ‘후원’ 가운데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투쟁대상도 주로 조선인 ‘악지주’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천지역의 소작쟁의는 단순한 소작관계 개선운동(생활권 옹호운동)만은 아니었다. 즉, 순천지역의 소작쟁의는, 그것이 소작권이동과 관련한 것이었건 아니면 소작료문제와 관련한 것이었건 간에 궁극적으로는 식민지 조선문제의 결절점인 농업·농민·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식민지 지주제의 혁파)을 지향하는 운동, 혹은 그런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풍부히 간직하고 있었던 까닭에 당연히 항일민족운동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가령, 소작쟁의가 격렬해지자 1924년 여름부터 주요 간부를 전면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한 것, 1930년대 초반의 농업공황으로 소작농민들의 생존권 옹호투쟁이 다시 가열될 기미를 보이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과 같은 농민개량화정책을 실시한 것 등은 일제조차도 소작쟁의의 항일운동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비록 1920년대 후반경부터 침체현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소작인조합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순천지역 소작농민들의 항일민족운동 역량,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몇몇 지도자들의 정치적·도덕적 권위는 해방 후 순천지역에서 전개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건설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참고자료

조동걸, 『일제하 한국농민운동사』, 한길사, 1978.

이철우, 「1920년대 전라남도 순천지역의 농민항쟁과 범(상)」, 『협사학연구』10, 1989.

金森襄作, 「朝鮮農民組合史—1920年代の晉州·順天中心にして」, 『조선사총』5·6합병, 1982.

大和和明, 「1920年代前半期の朝鮮農民運動—全南順天郡の事例を中心に」, 『歷史學研究』502호, 1982.

김점숙, 「1930년대 전남지방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연구」, 『전남사회운동사연구』, 1992.

김점숙, 「1920년대 전남지방 농민운동—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 지역운동사(호남편)』, 여강, 1993.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